

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

검 토 보 고

건 설 과

□ 예산안 규모

○ 세 입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회 추경	기정액	증 감	비율(%)
계	13,275,595	5,949,579	7,326,016	123.13
지방교부세등	600,000	0	600,000	
조정교부금등	1,900,000	0	1,900,000	
국고보조금등	2,897,466	2,243,950	653,516	
시비교부금등	5,273,500	2,601,000	2,672,500	
보전수입등맞내부거래	1,500,000	0	1,500,000	

○ 세 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회 추경	기정액	증 감	비율(%)
계	22,797,361	13,104,923	9,692,438	73.96
국공유재산 관리	715,100	51,100	664,000	
도로관리	12,843,036	7,041,962	5,801,074	
녹색자전거 운영	609,866	495,366	114,500	
하수도 및 하천관리	3,424,406	2,866,490	557,916	
자연재해 사전예방	4,826,000	2,291,000	2,535,000	
행정운영비	216,006	212,490	3,516	
재무활동	16,432	0	16,432	

□ 건설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

-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3.13%인 7,326,016천원이 증액된 13,275,59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
-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3.96%인 9,692,438천원이 증액된 22,797,361천원으로 편성되었음

□ 주요 편성내역

◎ 세 입 (p 421~422)

<지방교부세등>

- 풍암마을~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(성립전)----- 300,000천원
- 구삼호교(인도교) 보수보강공사(성립전)----- 300,000천원

<조정교부금등>

-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----- 1,900,000천원

<국고보조금등>

-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----- 490,000천원

<시비보조금등>

-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----- 245,000천원
-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(성립전)----- 1,500,000천원
-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(성립전)----- 597,000천원

<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>

-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(태화 자연재해위험
개선지구 정비사업)----- 1,500,000천원

◎ 세 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회 추경	기 정 액	비교증감	예산안 페이지
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(401-01)	654,000	0	654,000	p425
2025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(성립전)(401-01)	597,000 시 597,000	0	597,000 시 597,000	p426
풍암~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(401-01)	1,856,950 균 1,041,950 구 515,000 특 300,000	1,156,950 균 1,041,950 구 115,000 0	700,000 균 0 구 400,000 특 300,000	p426
주연길 도로확장공사(401-01)	650,000	0	650,000	p426
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(성립전) (401-01)	1,500,000 시 1,500,000	0	1,500,000 시 1,500,000	p426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회 추경	기 정 액	비교증감	예산안 페이지
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(401-01)	2,700,000 시 800,000 금 1,900,000	1,000,000 시 1,000,000 금 0	1,700,000 시 △200,000 금 1,900,000	p427
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(401-01)	1,500,000	0	1,500,000	p430
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(401-01)	3,326,000 균 1,692,000 시 846,000 구 788,000	2,291,000 균 1,202,000 시 601,000 구 488,000	1,035,000 균 490,000 시 245,000 구 300,000	p430

□ 검토의견

- 예산안 p425 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, 시설비(401-01)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654,000천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